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하는 현행 별표는 2010년 이후 별도의 개정 없이 유지되어온 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함.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변경(별표1 제1호)”

- 1)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설정된 뒤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설정 당시와 현재의 정책 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생활지원은 제외)의 기본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음.”
- 3) 시설 기본 입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별표1 제2호)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에 따라 학업, 취업 및 창업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입소기간 연장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자립준비 사유를 추가하는 동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으로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유형		입소기간	연장가능 입소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모자가족 복지시설	1) 기본생활지원형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2) 공동생활지원형	3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3) 자립생활지원형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나. 부자가족 복지시설	1) 기본생활지원형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2) 공동생활지원형	3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3) 자립생활지원형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1) 기본생활지원형	출산 전·후 1년 이내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공동생활지원형	3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다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 우에는 총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별표 1 제2호가목 중 “학교”를 “학교(「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포함)”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모 또는 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교육에 참여한 중인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으로부터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인 경우

마. 모 또는 부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 시험 학습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응시 신청을 한 경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또는 질병이나 자립 준비 등의 사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기타 사유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기간과 별도로 시설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